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4.

발 의 자: 박지혜 · 윤후덕 · 박 정
안도걸 · 권향엽 · 김성원
임미애 · 장종태 · 손명수
이재강 · 전진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」에 반환공여 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8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7. 「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